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35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최인호·김주영·노웅래

박상혁 • 박홍근 • 서동용

서영교 · 위성곤 · 이원택

이학영 · 최기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고려 할 때 그 사유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

그런데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정정이나 변 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이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
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한)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	
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
	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